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911호 2012. 8. 13.(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867호 공시 송달 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880호 폐기공인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883호 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외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8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할 신청이 접수되어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8. 6. ~ 2012. 08.20.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의 사유: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인함
4. 공시송달 내용

『인천서구~김포 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내 토지인 금곡동 323-1외 117필의 토지(임야)분할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분할 처리 결과를 알림

5. 공시송달 내역: 아래 별첨 참고
6. 기 타 사 항 : 토지(임야)분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32-44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필지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 전 지번	분할 후 지번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1	금곡동	323-36	323-36 323-50	양범모	인천 연수구 동춘동 럭키 @101-1006
2	금곡동	324-20	324-20 324-24	이상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1331 두산@ 116-1203
3	금곡동	344-2	344-2 344-3	신현구	인천 서구 금곡동 379
4	금곡동	349-1	349-1 349-6	김영만 이기연	인천 서구 금곡동 349-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705-1
5	금곡동	349-3	349-3 349-7 379-5	김영만 이기연	인천 서구 금곡동 349-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705-1
6	금곡동	350-3	350-3 350-8	이기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705-1
7	금곡동	350-4	350-4 350-9	이기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705-1
8	금곡동	378-4	378-4 378-8	정춘자 김동구 이용환 이강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64-2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107-701 서울 도봉구 창동 신건영빌라 10-401 서울 은평구 응암동 197-8
9	금곡동	379-6	379-6 379-20	김상용	인천 서구 금곡동 379-4
10	금곡동	379-15	379-15 379-25	오근옥 김덕문	인천 서구 금곡동 379
11	금곡동	379-17	379-17 379-26	오근옥 김덕문	인천 서구 금곡동 379
12	금곡동	380-2	380-2 380-4	권갑손	인천 서구 금곡동 392
13	금곡동	386	386 386-1	신옥윤 신옥향 신옥련	서울 강서구 염창동113 서울 강서구 염창동 188 인천 동구 송현동 44
14	금곡동	405	405 405-2	양재용	인천 서구 금곡동 378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 전 지번	분할 후 지번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15	금곡동	412-6	412-6 412-17	양범모	인천 연수구 동춘동 럭키 @101-1006
16	금곡동	501-4	501-4 501-8	유애자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면빌라 3-202
17	금곡동	501-6	501-6 501-9	강상구	인천 서구 금곡동 501-6
18	금곡동	501-7	501-7 501-10	최옥현	인천 서구 오류동7-1
19	금곡동	502-3	502-3 502-5	권이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대 @404-1904
20	금곡동	505	505 505-2	최옥현	인천 서구 오류동7-1
21	금곡동	509-1	509-1 509-15	국중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우성@ 202-1502
22	금곡동	509-8	509-8 509-23	김용하	인천 부평구 부평동 604-10
23	금곡동	519-11	519-5 519-11	김선희	인천 서구 금곡동 521-1
24	금곡동	520-4	520-4 520-11	황진상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710-301
25	금곡동	520-6	520-6 520-13	황금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 가지@ 121-303
26	금곡동	산89-2	산89-2 산89-6 산89-7	정남수 양경모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삼성@ 3-902
27	금곡동	산90-3	산90-3 산90-4 산90-5	정춘자 김동구 이용환 이강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64-2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107-701 서울 도봉구 창동 신건영빌라 10-401 서울 은평구 응암동 197-8
28	금곡동	산161-8	산161-8 산161-10	김환균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31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 등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를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를 “매일 오전 0시부터의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2호의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은 휴업하여야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4항에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경제지원과장, ☎ 560-4431 , Fax 560-2730)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조의2」를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의2」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1호에서 「는 영업을 할 수 없다.」를 「매일 ~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2호에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은 휴업하여야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을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880호

폐기공인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폐 기 사 유 : 청라동 분동
2. 폐기 연월일 : 2012. 8. 8
3.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참조”

폐 기 공 인 인 영

공 인 명	규 격(㎠)	공인 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동 민원전용	2.4 × 2.4		청라동 본동
청라동장인	2.1 × 2.1		"
청라동장인/민원전용	2.1 × 2.1		"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경리관인	2.0 × 2.0		"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분임경리관인	2.0 × 2.0		"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물품관리관인	2.0 × 2.0		"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물품출납원인	1.8 × 1.8		"

폐 기 공 인 인 영

공 인 명	규 격(㎠)	공인 인영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지출원인	2.0 × 2.0		청라동 분동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일상경비출납원인	1.8 × 1.8		"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징수관인	2.0 × 2.0		"
청라동장인/민원전용 (인증기)	2.1 × 2.1		"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동민원전용 (인증기)	2.4 × 2.4		"
청라동장인/민원전용2 (인증기)	2.1 × 2.1		"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동민원전용2 (인증기)	2.4 × 2.4		"

폐기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전자이미지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청라동장인	2.1×2.1		청라동 분동
청라동장인/민원전용	2.1×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883호

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2. 8. 10 ~ 2012. 8. 27

○ 제 목 : 처분통지(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자 불이행)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하고 처분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				
전화 032-560-4153 FAX 032-560-2720				
서구청 재무과 / 과장 주성수 / 경리담당 이흥무 / 담당자 김미연				
문서번호 : 재무과 -16072				
발 신 일 : 2011. 08. 10				
수 신 : 수신자 참조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고려해양조선(주)	사업자등록번호	121-81-58453
	주 소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7, 3-19		
	대 표 자	김 기 훈	법인등록번호	120111-0308735
	주 소	-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	면허·등록번호등	-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 재 연 월 일	2012.08.06	만료연월일	2013.02.05
	제 재 기 간	2012.08.06 ~ 2013.02.05 (6개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 우리구와 계약한 『안암도(세어도)임시선착장 설치공사 관급자재(경량폰톤)구매설치』에 대하여 하자보수요청에도 하자보수를 불이행함에 따라 부정당 제재 및 하자보증금 환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				
수신처 : 고려해양조선(주) 대표자 김기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8.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이 준공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법정동인 원창동, 경서동, 연희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토지 매각시 1개의 필지내 2개 법정동이 혼재,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함.

2. 주요내용

- 별표 중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란 행정구역 개정
 - 경서동
 - 원창동에서 398번지의 50필지 편입지역 포함
 - 연희동에서 562-1번지의 5필지 편입지역 포함
 - 연희동으로 경서동 625-2, 671-1번지 편입지역 제외
 - 연희동
 - 경서동에서 625-2, 671-1번지 편입지역 포함
 - 경서동으로 연희동 562-1번지의 5필지 편입지역 제외
 - 원창동
 - 경서동으로 원창동 398번지의 50필지 편입지역 제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8.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513/Fax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경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서동 일원 - 2003.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경서동 1, 1-1, 1-3~5, 1-21, 1-26~29, 1-31, 1-33, 1-47, 1-50, 1-55~64, 2-4,~5, 2-7, 2-9~12, 3-46~47, 5-37~39, 6-1~3, 6-5~14, 6-18~21, 6-23~37, 7-2~5, 8-4~5, 382-3, 산1-1, 산18-8 - 2003.7.29 연희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연희동 555-18) - 연희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연희동 562-1, 563, 563-2, 595-2, 596, 626 - 연희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경서동 625-2, 671-1 -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원창동 398, 398-1~8, 398-10~16, 398-42, 398-60~70, 402, 402-1, 402-21~32, 403-36~42, 430-1, 431-4
연희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동 일원 - 2003.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연희동 73-1, 73-5, 555-15~17 - 2003.7.29 경서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 연희동 555-18 - 경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경서동 625-2, 671-1 - 경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연희동 562-1, 563, 563-2, 595-2, 596, 626
원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창동 일원 - 경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원창동 398, 398-1~8, 398-10~16, 398-42, 398-60~70, 402, 402-1, 402-21~32, 403-36~42, 430-1, 43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 · 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 · 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2. 8. 11 ~ 8. 31. ○ 내 용 - 의견수렴	갑,을,병,무,기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2012. 8. 11 ~ 8. 31. ○ 내 용 - 구보,홈페이지 게재	-	-	-